

체육관 및 헬스장 운영 재개 프로토콜: 부록 L

2021년 5월 6일 금요일 오전 12:01로부터 효력 발효

최신 업데이트: (변경사항은 노란색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2021년 5월 5일: 실내 수용인원은 해당 건축법 또는 소방법에 따라 최대 수용인원의 50%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실내 온수 욕조, 사우나 및 한증막은 사용을 위해 다시 개방할 수 있습니다.

COVID-19 사례 발생률, 입원율, 사망률이 일부 감소했고 안정돼 보이지만, COVID-19 은 여전히 지역사회에 고위험을 초래하며, 모든 주민 및 사업체가 확산을 늦추기 위해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며 운영과 활동을 변경해야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주정부의 안전한 경제 체계를 위한 청사진에서 규정한 “노란색 등급”에 진입했기 때문에, 일부 지역 활동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본 프로토콜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체육관과 헬스장은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COVID-19 의 잠재적 확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주의하며 운영해야 하며 본 프로토콜의 요구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공중 보건국은 요가 및 무용 강습소, 1:1 헬스 훈련 및 암벽 등과 같은 특정 체육관 및 헬스장(총칭 “체육관 및 헬스장”)에만 적용됩니다. 해당 업종은 주지사가 특정 소매업체에 도입한 조건 외에도, 본 체육관 및 헬스장 운영 재개 프로토콜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체육관과 헬스장은 제한된 수용인원으로 실내 운영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체육관과 헬스장의 실내 운영은 해당 건축법 및 소방법에서 규정한 수용인원의 50%로 제한하며, 야외 운영은 일반 대중에게 계속 개방해도 됩니다. 헬스장의 야외 운영이 실내 운영보다 확산 위험이 낮기 때문에, 체육관과 헬스장은 야외 서비스를 계속 우선시하도록 권장됩니다. 실내 및 야외 운영 모두에서, 모든 직원과 고객들에게 수영할 때를 제외하고, 항상 적절한 안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안면 마스크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LAC DPH 의 COVID-19 마스크 웹페이지 <http://ph.lacounty.gov/masks> 를 참조하십시오.

실내의 온수 욕조, 실내 사우나, 및 한증막은 개방할 수 있습니다. 실내의 온수 욕조는 가족 단위로만 사용하거나, 비가구원과 6 피트 신체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을 때 개방할 수 있습니다. 사우나와 한증막은 수용인원의 50%로 제한해야 합니다. 실내의 수영장은 정기 사용을 위해 개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수영장은 LACDPH 의 공공 수영장을 위한 프로토콜을 준수해야 합니다.

참고: 이 문서는 추가 정보 및 자료가 확보되면 업데이트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버전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웹사이트 <http://www.ph.lacounty.gov/media/Coronavirus/>에서 정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본 점검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

- (1) 직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직장의 정책 및 실천 방법
- (2) 신체적 거리두기를 위한 확실한 조치
- (3) 감염 관리를 위한 확실한 조치
- (4) 직원 및 일반 대중과의 소통
- (5) 중요 서비스를 공정하게 제공하기 위한 확실한 조치

귀하의 시설 재개 프로토콜을 계획할 때 위 5가지 핵심 부분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본 지침에 적용되는 모든 사업체는 아래에 열거된 해당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은 조치가 귀하의 시설에 왜 적용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체 이름: _____

시설 주소: _____

소방법에 따른 최대 수용인원: _____

대중에게 출입을 허용하는 공간의
대략적인 총 평방 피트: _____

**A. 직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직장의 정책 및 실천 방법
(시설에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표시하십시오)**

- 집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직원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합니다.
- 취약계층 직원(만 65세 이상, 임산부, 만성적인 질환이 있는 직원)에게 가능하면 집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할당하고, 해당 직원은 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나 직업 보건 서비스 기관과 상의하여 적절한 직장 복귀 시기를 결정합니다.
- 직원들의 재택근무 기회를 늘리기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업무 과정을 재구성합니다.
- 신체적 거리두기를 극대화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엇갈리게 배치하거나, 시차 또는 교대 근무 일정을 수립합니다.
- 모든 직원에게 아프거나 COVID-19 확진자에게 노출된 경우 출근하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모든 직원은 해당되는 경우 공중 보건국(DPH)의 자가 고립 및 격리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질병으로 집에 머물러야 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설의 휴가 정책을 검토하고 수정합니다.
- LACDPH의 [입장 증상 점검 지침](#)에 따라, 직원, 공급업체, 배달 담당자 및 현장 서비스 제공자들이 작업장에 들어오기 전에 입장 증상 점검을 시행합니다. 증상 점검은 기침, 숨 가쁨, 호흡곤란, 발열이나 오한, 그리고 개인이 현재 고립 또는 격리 명령을 수행 중인지 여부 관련 점검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검은 원격으로 하거나, 직원이 도착하는 즉시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현장에서 체온을 점검합니다.
 - 음성 증상 점검(출입 허가): 증상이 없고 지난 10 일 동안 COVID-19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은 사람에게 당일 입장 및 근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양성 증상 점검(출입 비허가):
 - COVID-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고 ¹, 지난 10 일 동안 COVID-19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현재 격리 명령을 수행 중인 사람은 입장 또는 현장 근무를 할 수 없으며 즉시 집으로 돌아가 자택 격리를 해야 합니다. 당사자에게 ph.lacounty.gov/covidquarantine에 있는 격리 지침을 제공하십시오.
 - 위에서 언급한 증상 중 어떤 증상이라도 보이거나 현재 고립 명령을 수행 중인 사람은 입장 또는 현장 근무를 할 수 없으며 즉시 집으로 돌아가 자택 고립해야 합니다. 당사자에게 ph.lacounty.gov/covidisolation에 있는 고립 지침을 제공하십시오.

¹COVID-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란 2회 접종 백신(예: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또는 모더나)의 2차 접종 후 이(2)주 이상 경과, 또는 1회 접종 백신(예: 존슨앤존슨[J&J]/얀센)의 접종 후 이(2)주 이상 경과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 직원들이 집에 머무를 때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정부 또는 고용주가 지원하는 휴가 혜택에 관한 정보를 직원들에게 제공합니다. [2021년 COVID-19 유급 병가 법규 부록](#)에 따른 직원의 병가 권리를 포함한 유급 병가와 COVID-19 근로자 보상 혜택을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에 관해 추가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 ❑ 양성 판정을 받았거나 COVID-19과 일치하는 증상을 보이는 직원(사례)이 한 명 이상 있다고 통보받으면, 고용주는 해당 사례자가 [집에서 자가 고립](#)하도록 하고, 직장에서 사례자에게 노출된 모든 직원을 즉시 [자가 격리](#)하도록 하는 계획 또는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용주의 계획은 시설에서 추가 노출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COVID-19 관리 조치를 추가해야 할 수 있어야 하므로, 모든 격리 대상 직원에게 진단 검사를 제공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하는 프로토콜을 시설의 계획에 포함하도록 고려합니다. [직장에서 COVID-19에 대응](#)에 관한 보건국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 직장 내에서 14일 이내에 3건 이상의 확진자를 확인한 경우, 고용주는 이 집단발병을 반드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공중 보건국에 (888) 397-3993 또는 (213) 240-7821로 전화하거나 온라인 www.redcap.link/covidreport로 보고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집단발병이 확인되면 공중 보건국은 감염 관리 지침 및 권고, 기술적 지지 및 시설별 관리 조치를 포함한 집단발병 대응책을 시행할 것입니다. 공중 보건국은 집단발병 조사를 위해 시설에 사례관리자를 배정하여 시설의 대응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공중 보건국은 사례의 집단발병이 COVID-19 발병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설의 빠른 협조가 필요합니다.
- ❑ 다른 사람과 접촉해야 하는 직원에게 코와 입을 가리는 [적절한 안전 마스크](#)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LAC DPH의 COVID-19 마스크 웹페이지 <http://ph.lacounty.gov/masks> 를 방문하십시오. 직원은 근무 중에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있을 때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안전 마스크를 착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시를 받은 직원은 건강 상태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아래에 위생 천이 달린 안전보호대를 반드시 착용하여 주정부의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천이 턱 아래에 딱 맞게 제작된 안전보호대가 선호됩니다. 단방향 밸브가 있는 마스크는 절대 착용해서는 안 됩니다. 과도한 운동 중에는 공기 흐름을 방해하는 마스크(예: N-95 마스크)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 ❑ 모든 직원은 문을 닫은 개인 사무실에서 혼자 일할 때 또는 식사를 하거나 음료수를 마실 때를 제외하고 항상 안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전 명령에서 예외 대상이었던 직원의 키를 넘는 단단한 칸막이가 설치된 큐비클에서 일하는 직원은 이제 예외 대상이 아닙니다.
- ❑ 직원들이 마스크를 일관되고 올바르게 착용하도록 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신체적으로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안전하게 벗을 수 있는 휴식 시간 외에는 식사를 하거나 음료를 마시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직원은 식사나 음료수를 마실 때 항상 다른 사람과 6피트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야외에서 다른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식사를 하거나 음료를 마시는 것이 선호됩니다. 큐비클이나 작업대가 직원들 간에 더 넓은 거리와 장벽을 제공하면, 휴게실보다는 큐비클이나 작업대에서 식사를 하거나 음료수를 마시는 것이 선호됩니다.
- ❑ 직원들이 식사 및/또는 휴식을 위해 사용하는 모든 공간 또는 구역은 수용인원을 감소시키고 직원들 간의 거리를 최대화합니다. 이는 다음을 통해 달성합니다:
 - 휴식을 위해 사용하는 공간 또는 구역에 개인들 간 최소 6피트 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최대 수용인원 게시하기, 그리고
 - 식사 및 휴식을 위해 사용하는 공간 또는 구역에서 휴식 또는 식사 시간을 엇갈리게 배정하기, 그리고
 - 테이블을 최소 8피트 간격으로 배치하기, 의자 사이에 6피트 간격 보장하기, 수용 인원을 줄이기 위해 의자를 제거하거나 의자에 테이블 사용금지 표시하기, 얼굴을 마주하는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의자를 배치하기. 바이러스의 확산을 더욱 방지하기 위해 칸막이 사용이 권장되지만, 이를 수용인원 줄이기 및 신체적 거리 유지하기의 대안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동료 직원이나 손님과 6피트 내에 일상적으로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하는 직원은 안전 마스크 위에 이중 가리막(예: 안전보호대 또는 보안경)을 착용해야 합니다. 모든 직원은

손님과 6피트 내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고용주에게 예방접종 완료 증명서를 보여준 직원에게 안면보호대 착용은 선택입니다.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필수입니다. COVID-19 예방접종 완료 증명서를 제시하고 안면보호대를 착용하지 않기로 선택한 예방접종 완료 직원이 있는 경우, 고용주는 각 직원이 허용 가능한 예방접종 완료 증명서를 제시했다는 기록을 서면 문서로 보관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직원이 보여준 예방접종 완료 증명서의 사본을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 2회 접종 백신(화이자-바이오엔테크 또는 모더나)의 2차 접종을 맞은 후 2주 이상이 경과했거나, 1회 접종 백신(존슨앤존슨 [J&J]/얀센)의 1차 접종을 맞은 후 2주 이상이 경과했으면 COVID-19 예방접종을 완료했다고 간주됩니다.
- 직원이 고용주에게 COVID-19 예방접종 완료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 다음 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카드(예방접종한 사람의 이름, 마지막으로 접종한 백신의 유형 및 접종 날짜를 포함) 또는 예방접종 카드의 사진인 별도의 문서 또는 전화기 또는 전자 장치에 저장된 참석자의 백신 카드 사진 또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예방접종 전체 문서 (예방접종한 사람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고, 그 사람이 COVID-19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 직원들에게 매일 안면 마스크를 세탁 또는 교체하라고 지시합니다.
- 모든 작업대는 최소 6피트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 휴게실, 화장실 및 기타 공용 구역은 다음 일정에 따라 최소 하루에 한 번 소독합니다.
 - 휴게실 _____
 - 화장실 _____
 - 기타 _____
- 시설에서 근무하는 임시직 또는 계약직 근로자들에게도 COVID-19 예방 정책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받았는지, 필요한 물품과 개인 보호 장비(PPE)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임시직 및/또는 계약직 근로자를 제공하는 회사와 사전에 이런 책임에 대해 의논합니다.
- 직원들은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안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피트니스 시설, 사무실 또는 회사 소유 차량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이동할 때 안면 마스크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이를 착용해야 합니다. 안면 **마스크**의 착용은 근무 중에 신체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없을 때 특히 중요합니다 (예: 회원의 운동을 도와주는 개인 트레이너 및 직원). 안면 마스크는 공유하면 안 됩니다. 고용주는 모든 직원에게 안면 마스크를 제공해야 합니다.
- 소독제 및 관련 용품을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장소에 비치합니다:
 - _____
- COVID-19에 효과적인 손 소독제를 모든 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장소에 비치합니다:
 - _____
- 직원들이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잦은 휴식 시간을 허용합니다.
- 본 프로토콜 사본을 모든 직원에게 배포합니다.
- 각 직원에게 개인 도구, 장비 및 작업 공간을 할당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만지는 물건은 최소화하거나 제거합니다.
- 고용 조건과 관련된 것 이외의 본 점검표에 설명된 모든 정책은 배달 직원 및 제3자로 사내에 머무는 다른 회사 직원에게도 모두 적용됩니다.
- 선택 사항 - 기타 조치를 설명하십시오:
 - _____

B. 신체적 거리두기를 확실히 하기 위한 조치

- 실내 운영. 체육관 및 헬스장의 실내 운영은 해당 건축법 또는 소방법에 따른 시설 최대 수용인원의 50%로 제한합니다. 이 수용인원 제한은 체육관 또는 헬스장에 있는 화장실, 샤워실, 사우나, 한증막 및 탈의실을 포함한 개별 공간에 적용됩니다.
 - 시설에 제한된 최대 고객 수: _____
- 야외 운영. 야외 공간의 수용인원은 모든 직원과 손님이 항상 다른 사람과 최소 6피트의 신체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제한합니다.
- 야외 구조물 및 공간. 야외 운영은 캐노피나 다른 그늘막에서 수행할 수 있지만, 캐노피 또는 그늘막의 측면이 닫히지 않고 외부 공기가 충분히 순환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야외 운영에 사용되는 모든 야외 공간 또는 임시 구조물은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국의 [야외 사업 운영을 위한 임시 야외 구조물 사용](#)에 관한 필수 지침에 명시된대로 야외 시설에 대한 주정부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야외 시설을 위한 주정부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야외 구조물은 실내 시설로 분류되고, 해당 시설에 있는 모든 고객의 수도 계산해 시설의 실내 수용인원의 50%로 제한된 총인원에 포함합니다.
- 직원들은 체육관/헬스장 제한 수용인원 및 신체적 거리두기 요구조건 준수를 보장하고 수용인원을 추적하기 위해 모든 출입구에서 실내로 출입하는 고객의 수를 엄격히 그리고 계속 측정해야 합니다. 체육관/헬스장은 출입 인원을 쉽게 추적하기 위해 정상 영업 시간 동안 일반 대중에게 개방하는 출입구의 수를 제한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체육관/헬스장에서 출입 인원 측정이 불충분하거나 측정하지 않은 경우, 또는 수용인원이 초과된 경우에 보건 감사관의 재량에 따라 해당 문제가 시정될때까지 임시 영업 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 회원들이 시설 외부에 줄을 서지 않도록 하고, 수용인원 유지를 돕기 위해 체육관/헬스장 입구에 직원을 배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 실제로 운동하는 회원만 체육관/헬스장에 머물 수 있습니다.
- 실내외 체육관/헬스장의 모든 직원과 회원은 수영할 때, 사우나/한증막 안에서 또는 샤워할 때를 제외하고 항상 안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 에어로빅, 요가, 춤과 같은 단체 수업은 최대한 야외에서 진행되어야 하고 회원들 사이에 최소 6피트의 신체적 거리두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수강 인원 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 단체 수업은 거리두기 요구조건을 지킬 수 있고 사람간 신체 접촉이 없는 경우에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에어로빅, 스피닝(실내 자전거 타기) 또는 훈련과 같은 강도가 높은 유산소 운동 수업이나 일립티컬 운동기구, 러닝머신 또는 계단형 운동기구와 같은 기구는 개인과 장비의 간격을 6피트가 아닌 최소 8피트 간격으로 배치할 것을 고려합니다.
- 실외 스포츠 코트는 개인 연습이나 운동 내내 6피트의 신체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활동을 할 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코트를 사용하기 위해 대기할 때는 이용자별 코트 사용 시간제한 정책을 시행합니다. 대기 중인 이용자는 신체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 100°F 이상에서 진행되는 요가 수업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 개인 트레이너는 회원과 6피트 거리를 유지하고 안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회원들은 강습을 받는 동안 안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코와 입 모두를 가리는 안면 마스크는 착용하는 동안 편안히 숨을 쉴 수 있을 정도만 운동해야 합니다.
- 운동 기구는 최소 6피트의 간격을 두고, 러닝 머신과 기타 고강도 유산소 운동 기구는 더 넓은 간격을 두고 배치합니다. 운동 기구는 간격을 더 넓힐 수 있는 “X” 패턴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옮길 수 없는 운동

기구는 회원들이 서로 최소 육(6) 피트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장비에 표시해 둡니다. 테이프나 다른 표시를 사용해 고객들이 줄에서 기다리는 동안 서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6피트 거리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회원들이 운동 기구에 도착하면 줄을 서서 기다릴 수 있도록 대기 줄의 시작 선부터 6피트 간격으로 대기 선을 표시합니다.

- 시각적 신호와 안내판을 이용해 야외 시설 공간의 유동 인구가 한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합니다.
- 직원들에게 체육관/헬스장 공간 전체에서 직원 간 그리고 회원들과 서로 최소 육(6) 피트 거리를 유지하라고 지시합니다. 직원들은 결제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전달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잠시 회원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 **마사지** 서비스는 허용되며, 개인 관리 서비스 프로토콜 게시물의 관련 부분을 준수해야 합니다.
- 시설 내의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은 수용 인원을 **50%**로 제한하여 고객에게 개방할 수 있습니다.
- 안내문과 바닥 표시를 사용해 고객들이 탈의실에 있는 동안 적절한 신체적 거리두기를 확실히 합니다.
- 공동 화장실 시설은 하루 동안 EPA 등록 소독제를 사용해 규칙적으로 청소해야 합니다. 수도꼭지, 변기, 문고리 및 조명 스위치와 같이 자주 접촉하는 표면은 최소 하루에 한 번, 그러나 필요 시 더 자주 청소 및 소독해야 합니다.
- 화장실 시설의 청소 일정을 만들어 게시합니다. 청소 및 소독을 시행하는 동안 화장실을 반드시 폐쇄합니다.
- 점검표나 감사 시스템을 사용해 청소 빈도를 추적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 위생 시설이 항상 작동하고 위생용품을 항상 비축하도록 하십시오. 필요할 때 비누, 종이 타월, 손 소독제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가능하면, 동작 감지 싱크대 수도꼭지, 비누 디스펜서, 소독제 디스펜서, 종이 타월 디스펜서를 포함한 비접촉 장비를 설치합니다.
- 가능하면 개폐장치나 전동식 손잡이를 사용하여 손잡이를 만지지 않고 문을 여닫을 수 있도록 칸이 많은 화장실의 문을 개조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손잡이나 손잡이가 있는 문 개폐 장치를 만지지 않고 문을 열 수 없는 경우에는, 문을 열 때 바로 종이 타월을 버릴 수 있도록 문 옆에 휴지통을 비치합니다. 휴지통의 위치 및 배치는 출구, 대피로, 비상 장비 또는 미국 장애인법에 따른 모든 합리적인 편의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화장실에 안내판을 게시하는 등 손을 올바르게 씻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소매점 운영, 보육 시설 및 식사 서비스와 같은 비필수 서비스의 중단을 고려합니다. 헬스장에서 이러한 편의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활동 관련 카운티 공중 보건국의 프로토콜을 검토하고 따라야 합니다.
- 체육관의 수영장 시설은 또한 카운티의 공공 수영장 프로토콜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실내 온수 욕조, 사우나 및 증기실은 폐쇄 상태를 유지합니다.

C. 감염 관리를 위한 조치

- HVAC 시스템은 정상 작동 상태이며, 가능한 최대로 작동하여 환기를 증가시킵니다. 효과적인 환기가 작은 입자의 공기 매개 확산을 통제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의 하나입니다. 고효율 공기청정기 설치, 건물의 공기 필터를 최고 효율로 업그레이드, 모든 직장 영역에서 외부 공기 및 환기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기타 개조 등을 고려해 봅니다. 자세한 정보는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국의 실내 환경을 위한 환기, 여과 및 공기의 질에 대한 예비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참고: 환기 및 기타 실내 공기의 질 개선은 안면 가리개 착용(적절한 호흡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는

특정 고위험 환경 제외), 사람들과 최소 6피트 거리두기, 자주 손 씻기, 및 다른 가구의 사람들이 모이는 활동 제한하기와 같은 의무 예방지침에 추가로 시행할 수 있지만, 대체되지는 않습니다.

- 모든 회원은 체육관/헬스장에 있는 동안 안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유일한 예외는 회원이 수영장에서 수영할 때, 사우나/한증막 안에서 또는 샤워할 때입니다. 이는 만 2세 이상의 어린이와 모든 성인에게 적용됩니다. 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안면 마스크를 착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시를 받은 사람은 건강 상태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아래에 위생 천이 달린 안면보호대를 반드시 착용하여 주정부의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천이 턱 아래에 딱 맞게 제작된 안면보호대가 선호됩니다. 단방향 밸브가 있는 마스크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격한 신체 운동을 하는 동안에도 참을 수 있을 만큼 마스크 착용이 요구됩니다.
 - 회원에게 안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동안 운동을 편안한 수준으로 제한하고, 호흡이 힘든 경우에는 운동을 멈추거나 자주 휴식을 취하라고 상기시켜야 합니다. 마스크가 젖거나, 얼굴에 달라붙거나, 호흡을 방해하면, 마스크를 교체해줘야 합니다. 직원들과 다른 손님들의 안전을 위해 안면 마스크를 준비해 오지 않은 손님에게 제공할 안면 마스크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 회원이 시설에 들어오기 전에 증상 점검을 시행합니다. 증상 점검은 기침, 숨 가쁨, 호흡곤란, 발열이나 오한, 그리고 개인이 현재 고립 또는 격리 명령을 수행 중인지 여부 관련 점검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검은 회원에게 직접 시행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으로 확인할 때 점검 또는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시설에 들어올 수 없다는 [안내판](#)을 시설 입구에 게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음성 증상 점검(출입 허가): 증상이 없고 지난 10일 동안 COVID-19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은 사람은 당일 입장 및 참여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양성 증상 점검(출입 비허가):
 - 지난 10일 동안 COVID-19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현재 격리 명령을 수행 중인 사람은 입장을 할 수 없으며 즉시 집으로 돌아가 자택 격리를 해야 합니다. 당사자에게 ph.lacounty.gov/covidquarantine에 있는 격리 지침을 제공하십시오.
 - 위에서 언급한 증상 중 어떤 증상이라도 보이거나 현재 고립 명령을 수행 중인 사람은 입장을 할 수 없으며 즉시 집으로 돌아가 자택 고립해야 합니다. 당사자에게 ph.lacounty.gov/covidisolation에 있는 고립 지침을 제공하십시오.
 - 비접촉 결제 및 체크인 기기를 준비하거나, 준비가 불가능하면 기기를 최소 하루에 한 번 소독합니다. 설명하십시오: ✘
-
- 체육관 또는 헬스장 시설 건물의 직원이 자주 통행하고 자주 사용하는 구역인 휴게실과 계단, 계단 통로, 에스컬레이터, 난간, 엘리베이터 제어기 등 입출구역은 하루 종일 철저히 청소합니다.
 - 개인 운동 기구와 장비, 문손잡이, 손 세정 시설 등 일반적으로 접촉하는 표면을 자주 소독합니다.
 - 회원들에게 개별 운동 장비, 매트 및 기기를 제공된 소독용 물티슈로 소독하도록 요구합니다. 헬스장 전체에 안감이 있는 비접촉식 휴지통을 비치하여 사용한 물티슈를 폐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회원이 운동한 후 장비를 청소/소독할 수 없거나 원치 않으면, 해당 회원에게 "청소 준비" 태그를 제공하여 장비를 사용한 후 장비에 걸도록 하고, 다음 사람이 사용하기 전에 직원이 장비를 소독합니다.
 - 다목적 세척제 및 소독제를 필요한 만큼 충분히 갖춰 두고, 모든 직원이 사용 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Cal/OSHA 요구 사항 및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씻을 때 필요한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합니다.
 - 직원이 소독하는 장소는 환기(공기 흐름)를 충분히 해줍니다.

- ❑ 위생 시설은 직원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생 시설은 운영을 유지하고 위생 물품을 항상 구비해 둡니다. 필요하면 비누, 종이 타월 및 손 소독제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가능하면 동작 인식 싱크대 손잡이, 비누 디스펜서, 소독제 디스펜서, 종이 타월 디스펜서를 포함한 비접촉식 기기를 설치합니다.
- ❑ 쓰레기통을 정기적으로 비웁니다.
- ❑ 회원들에게 청소 직원 또는 관리 직원으로부터 6피트 거리를 유지하라고 상기시킵니다. 회원들이 이 프로토콜을 따르는지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실시합니다. 직원들이 보복이나 앙갚음의 두려움 없이 이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 ❑ 회원들이 모든 소형 장비 및 액세서리(예: 운동 밴드, 로프, 매트, 폼 롤러 등)를 활용할 수 있도록 체크아웃 시스템을 시행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이런 제품을 반환할 때 세척 및 소독하는 과정을 개발합니다.
- ❑ 회원에게 본인의 물병을 준비할 것을 권장합니다. 회원에게 수건과 매트를 직접 준비해 오도록 권장하고 시설에서 수건이나 개인 위생제품의 제공을 중단할 것을 고려합니다.
- ❑ 모든 수건, 천걸레 또는 기타 세탁 물품의 경우 고객이 사용한 수건이나 기타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밀폐 용기를 제공합니다. 시설 내부 세탁 과정 또는 상업 세탁 서비스를 통해 해당 물품이 적절히 세탁될 때까지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모든 깨끗한 천은 깨끗하고 밀폐된 공간에 보관합니다. 더러운 천이나 빨래를 취급하는 직원은 장갑을 착용합니다.
 - 수건과 기타 물품을 카운터에서 셀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지 말고, 요청 시에만 직원이 제공하도록 합니다.
- ❑ 접수 구역 및 헬스장 내 모든 장소에서 잡지, 서적, 셀프서비스 식수대 (비접촉식 제외) 및 기타 물품을 포함한 고객을 위한 편의 시설을 제거해야 합니다.
- ❑ 직원이 청소 제품을 선택할 때는 환경 보호국(EPA) 목록에서 COVID-19에 사용하도록 승인된 제품을 사용하고 제품의 지침을 따릅니다. 신종 바이러스 병원체에 대해 효과적이라고 표시된 소독제나 가정용 표백제 희석 용액(물 1갤런당 표백제 5큰술), 또는 표면에 적합한 알코올이 최소 60% 함유된 용액을 사용합니다. 직원들이 화학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의 지침 및 Cal/OSHA 요구 사항에 관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직원들은 세척제 또는 소독제를 사용할 때 제품 지침에 따라 장갑과 기타 보호 장비를 착용합니다.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국에서 권장하는 천식 보호 세척 방법을 따릅니다.
- ❑ 야외 체육관/헬스장 공간에 일반 대중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손 소독제, 휴지, 쓰레기통을 비치합니다. 야외 공간에 직원과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손 세척 장소를 하나 이상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 ❑ 선택 사항 - 기타 조치를 설명하십시오 (예: 노인 전용 시간 제공):

D. 일반 대중과 소통하기 위한 조치

- ❑ 본 프로토콜 사본 또는 COVID-19 안전 준수 인증서를 받은 시설은 인증서 사본을 시설의 모든 공공 입구에 게시합니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거나, COVID-19 안전 준수 자가 인증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싶으시면, <http://publichealth.lacounty.gov/eh/covid19cert.htm>를 방문해 주십시오. 시설은 요청시 검토할 수 있도록 시설 현장에 프로토콜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 ❑ 회원들이 줄을 서는 입구에 그리고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안내판을 게시하여 직원과 회원들에게 제한 수용 인원, 사회적 거리두기 요구조건 및 수영장을 제외한 장소에서 항상 안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안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하는 동안 과도하게 운동하지 말라고 회원들에게 주의를 주는 안내판을 게시합니다. 추가 자료 및 업종별 사용 가능한 안내문 예시를 보시려면 [카운티 DPH COVID-19 지침 웹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 사업체는 온라인 매체(웹사이트, 소셜미디어 등)를 통해 영업시간, 안면 마스크 필수 착용, 야외 운영, 수용

인원 제한, 사전 예약, 선불과 관련된 정책 및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 중요 서비스를 공정하게 제공하기 위한 확실한 조치

- 손님/회원에게 중요한 서비스를 우선으로 제공합니다.
- 원격으로 제공할 수 있는 매매 또는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
- 이동에 제한이 있는 회원 및/또는 공공장소에 가면 위험한 회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합니다.
 - 노인을 포함한 고위험군 또는 건강상 취약한 계층만 예약을 받아 출입을 허용하는 특별 시간대를 지정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위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추가 조치는 별도의 페이지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내용을 본 문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본 프로토콜에 질문이나 의견이 있다면
다음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사업체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

마지막 개정일:

